

- 9. 공작물 설치내역 : · 집수매거(D1,000mm) : 220m
- 모터펌프(22Kw) : 3대
- 접합정(D3,000mm) : 3개소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4호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을 국가계약법시행령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청사신축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이라한다.)에 포함함.

나. 2011년 1월 1일 이후,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관련 부칙(유효기간) 규정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개정되는 시점부터 개시함.

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봄.

3. 의견제출

동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 전화 : 02-2150-5212
- 팩스 : 02-503-9291
- 이메일 : pck9494@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